

# 국내 실내디자인분야 관련법의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and System Improvements of Interior Design-Related Law in Korea

**Author** 이창노 Lee, Chang-No / 정희원,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A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domestic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ield-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is not recognized as in independent area due to weak classification standards by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job classification.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applied as a standard setting limits to applicable targets and industrial fields for laws related to general administration and industrial policy other than various statistic purposes. Also,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 regarding the industry field determines the laws or applicable tax rates, government support and such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d thus is very important. Moreover, interior architecture field is largely different from general architecture due to specialization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but due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architecture industry regulations, it is considered the proper assessment for the professionalism is not conducted. Also, interior architecture field has irrational contradictions that is not independent with a clear definition and industry field classification not only in legal system and trade customs. Therefore, The following is proposed as the plan to strengthen the domestic/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ystem improvements for interior architecture.

(1)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ust be amended as an industrial classification that can coexist with architecture.

(2)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ust be amended as a job classification that can coexist with architecture.

(3)Among the design tasks of an architect, approval for the design task field of interior architecture field must be legislated. -In architect design standard contract (the existing architecture design task scope and quality standard table) of a structure, among the tasks by request of the owner, ①interior design tasks shall be legislated. It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ajors can be included as well.

(4)The task field of interior design that coexists with design must be amended.

(5)National contract law - among contract method by negotiation, specialty item must be vitalized.

**Keywords**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 제도개선  
Interior Design(Interior Architecture) Field, Related Laws, System Improvem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실내 디자인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sup>1)</sup> 그 후 1960년대를 기점으로 청년작가들이 전시회 및 지상전을 통해 활동하였으며, 실내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요소 증대, 즉 상업공간이나 전시공간 등의 수요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실내디자인의 태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계에서는 1978년 7월 28일 39명의 창립동

인으로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KOSID)’가 창립되었으며, 교육계에서는 1988년 대학에 실내디자인학과가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실내디자인분야가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우수인력양성과 학술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sup>2)</sup>

1)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디자인(실내건축) 프로젝트는 반도호텔 리노베이션(1953-1955, 노먼 디한+강명구)으로 건축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입학정원 추정치는 2012년 현재 5,900여명에 이르며, 이는 실내디자인학과 인접학문 분야인 건축학전공의 입학정원 추정치 8,200명과 비교하면 약 72%에 이르는 규모이다. 박찬일, 국내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2012, p.228

\* 이 논문은 2012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1991년 3월 30일 ‘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의 발족과 더불어 1991년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의회(ICC)가 발족하였으며, 1979년 7월 발족된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KOSID)와 3단체 공동 발전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질적·양적으로 성장 동력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3단체 공동 발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진 1990년대는 인테리어디자이너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시기로서 1992년 대전 EXPO개최와 국제시장개방에 따른 준비 등이 활발하였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인 의장기사자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sup>3)</sup>를 제도권 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1991년 10월 20일 아시아 태평양 스페이스 디자이너협회(APSDA)가 창립되었으며, 1989년 5월 23일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IA)<sup>4)</sup>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회장국으로서의 활발한 활동 등, 국제적 무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에 의한 분류기준 등이 취약하여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업분야는 전문화와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건축업과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건축업 규정 때문에 그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는 법제도 및 업계의 관행뿐 아니라 학문분야에서의 명확한 정의 및 업역 구분으로 독립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모순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 및 조사 시기는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와 관련이 있는 관련법들이 5년마다 개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도 이후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영역 및 현재 실무에서 사용 중인 업무 프로세스를 고찰하였다.

둘째,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단체 및 산업

- 3) ‘국내 실내디자인분야의 관련법 현황과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내의 현황은 실내디자인과 실내건축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본 논문내용에서는 ‘실내디자인(실내건축)’으로 정의하여 통일성 있게 용어를 사용하였다.
- 4) IFI(세계실내건축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rior Architects/Designers)는 인테리어디자이너 및 실내건축가들로 구성된 비정부적 성격의 조직으로 각 국(45개국 52개 단체)의 협회, 기관, 학교가 회원 임)의 실내건축가들의 대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유일한 세계적인 단체이다. IFI는 ICOGRADA(세계그래픽디자이너연맹), ICSID(세계산업디자이너연맹)과 더불어 세계 디자인 3단체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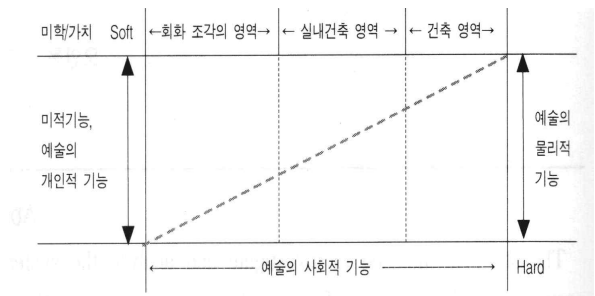
현황을 각 단체의 홈페이지 자료 및 정관을 토대로 파악하였다.

셋째,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관련법 및 제도 현황을 관련 웹사이트 및 참고문헌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영역 및 업무

### 2.1. 실내디자인(실내건축) 분야의 영역



<그림 1>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의 영역<sup>5)</sup>

<그림 1>과 같이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의 영역을 살펴보면, 실내디자인(실내건축)<sup>6)</sup> 영역은 미술과 건축의 중심축을 이루고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거대한 물적 구조체에는 예술적 기능을 통합시키고, 예술분야에는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미적 가치와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실내건축업은 공간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제반의 가치 공학적, 기술적 노하우의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통합 예술 환경을 위한 창조적 기여와 통합적 예술 환경인 공간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sup>7)</sup>

### 2.2. 실내디자인(실내건축) 분야의 업무내용

- 5) 장해수, 디자인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경쟁전략 차원으로 본 실내건축디자인기업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30
- 6)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의 개념은 실내공간에 대한 물리적·환경적 조건, 정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공간을 계획하는 작업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공간을 생활목적에 따라 쓰기 쉽고 안락한 분위기의 공간이 되도록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실내에 질서와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는 창조행위이다. 오인옥, 실내계획론, 기문당, 서울, 1992, p.11
- 7) 이연숙 외 5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업의 분류기준 개정작업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 p.3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실내건축의 업무내용은 전문건설업의 1.실내건축업-[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로 기술되고 건설공사의 예시에서는 [실내의장공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 목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상기 내용은 2000년 4월 18일 종전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장공사업이 이령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부칙이 변경되어 2001년 8월 25일에 건설업의 업종간 업종별 업무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있다.

2003년 8월 21일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명기된 전문건설업(8)의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다. 이 법령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이 조정되면서 '목재창호공사'가 실내건축공사업에 추가되어, 목재를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도 실내건축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었다.

현재 분류되어 있는 건설업의 종류에는 <표 1>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은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공사업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일반건설업	1.토목공사업 2.건축공사업 3.토목건축공사업 4.산업·환경설비 공사업 5.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목재창호공사 2.토공사업 3.미장·방수·조적 공사업 5.도장공사업 ..... 25.시설유지관리업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 내용임

그리고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항과 3항에 의거 일반업종 및 전문업종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제도적 보호경영의

- 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9) WTO, FTA 등은 국가의 각종 규제를 사라지게 하면서 기업들을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무한경쟁 체계 속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건설산업의 구조개혁과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수혜로부터 보호막 상실에 따른 경쟁심화와 업역 확보 및 관련된 문제 등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행 실내디자인(실내건축)업의 일반적인 업무진행과정은 '수주-계획-설계-입찰-시공-준공'으로 볼 수 있으며, 업역으로 간략히 대분류하면 <표 2>와 같이 실내건축설계<sup>10)</sup> 및 실내건축공사<sup>11)</sup>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실내디자인(실내건축설계) 및 실내건축공사업의 관련법 현황

구분	업무 내용	관련법 근거
실내디자인(실내건축설계업)	○실내건축설계는 인간이 거주하거나 작업하는 실내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계획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해 내는 문제해결과정이자 그 결과를 의미한다. 즉, 실내를 설계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구성적 매스가 되는 내부공간을 용도와 인간의 생활목적에 따라 기능적·정서적인 충족이 되도록 계획·설계하는 작업이다. 사용하고자하는 목적과 요구기능을 충족시킬과 동시에 개성 있고 아름다우며 합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인행위를 의미함.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 2.3. 실내디자인(실내건축) 업무 프로세스

현재 실무에서 사용 중인 실내디자인(실내건축)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1) Planning Phase(기본설계 단계)

기본설계 단계란, 클라이언트에 의해 발생된 프로젝트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킬 것인지를 구상 또는 계획하는 단계로써 대부분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전개방향이 결정되며, 더 나아가서는 프로젝트의 결과에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내건축업무 과정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시장기능의 제고, 부동산 투기 억제, 기술 선진화 및 정보화의 강화 그리고 민자 유치 사업의 확대 및 해외시장 활성화 등으로 집약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건설업의 핵심 경쟁 요소를 과거의 경험과 시공 기술력(Hard 능력)에서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능력, 금융조달능력, 전략적 제휴능력, 사업 타당성 분석 능력 등 다양한 소프트(Soft) 능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10) 현재 국내에서 실내건축설계분야는 크게 설계, 디자인, 시공, 마케팅 부문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실내건축분야의 설계부문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의하면 A\_프로그래밍, B\_계획설계, C\_기본설계, D\_실시설계, E\_시공관리, F\_감리 6단계로 직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2003년 KOSID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수탁연구로 진행되었던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실내건축부문)
- 11)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업'이란 공공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유지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내환경의 기능과 질에 속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는 공사업이다. 실내건축 공사업은 실내시공, 빌딩시스템 및 구성요소, 건축법규, 설비, 재료 및 마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실내환경에 관한 프로그래밍, 디자인 목적, 공간계획, 미학적 고려, 현장감리 등을 서비스하는 전문업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표 3> 실내디자인(실내건축) 기본설계 단계

단계	내용	관련법 근거
1.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계획의 수립	①설계개요 및 설계범위의 설정 ②설계비 산출 및 협의	없음
2.기본설계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검토, 종합	①클라이언트의 요구조건 정리 및 파악 ②대상물의 기본도면 입수(또는 현장실측)및 건축현황조사 ③종합분석표 작성 ④디자인의 전개방향 및 목표설정	없음
3.면적배분 및 공간분할	①기능에 따른 공간 배분 및 면적분할 ②동선계획	없음
4.디자인 원칙의 결정 및 전개	①디자인 Scheme의 결정 ②단위 평면계획 ③Color 계획 ④재료계획 ⑤조명계획 ⑥가구계획 ⑦바닥, 벽, 천장디자인 계획 및 전개 ⑧컬러, 재료, 조명 및 가구설계 ⑨설비계획(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	없음
5.PRESENTATION (표현)	①Image Sketch ②Rendering 및 Image Board 제작 ③Perspective 제작(3D) ④Modeling 및 애니메이션 제작 ⑤재료 및 컬러, 가구 등의 Sample 보드 제작 ⑥기본설계보고서의 제작 ⑦사진촬영 및 편집 ⑧영상브리핑 자료의 제작 ⑨개략견적서 작성	없음

(2) Design Phase(실시설계 단계)

실시설계단계란, 기본설계단계에서 작성한 디자인의 안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결정된 후 구상한 디자인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설계도 및 물량산출 조서, 일위대가, 견적서, 시방서, 공정표 등을 작성한다.

<표 4> 실내디자인(실내건축) 실시설계 단계

단계	내용	관련법 근거
1.설계도면의 작성	①평면도, 내부전제도, 천장도 ②단면도 및 각 부 상세도 ③창호도 ④마감재료 리스트 ⑤법례표	없음
2.서류의 작성	①물량산출 조서 및 견적서(내역서)작성 ②일위대가 및 단위 단가 작성 ③시방서(표준 및 특기시방)작성 ④공정표 작성	없음

(3) Construction (시공 및 감리 단계)

시공 및 감리 단계란, 클라이언트에 의해 발생된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단계로써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감리자이거나 별도로 지정된 감리자의 감독 하에 시공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품질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는 마지막 단계이다.

실내디자인(실내건축)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본 결과, 실내디자인(실내건축)설계에 대한 관련법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실내건축공사의 시공 관련법만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표 5> 실내디자인(실내건축) 시공 및 감리 단계

단계	내용	관련법 근거
1.시공업체의 선정	①현장 설명 및 입찰 ②견적서 및 공사 관련 서류 제출 ③낙찰 및 공사계약	건설산업 기본법
2.시공	①현장사무실 설치 ②각종 계약서류와 신고서류 제출 (예정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각종 관청 제출 서류, 하도급 신고서 등) ③설계도서의 검토 ④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 ⑤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⑥자재 반입 및 반출 관리 ⑦작업일지 작성 등	건설산업 기본법
3.감리	①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②시공도(시공업체 작성)의 검토 ③각종 재료시험 성과표 검토 ④공정에 따른 기성고 산정 ⑤준공도의 검토 ⑥작업일지 확인 및 감리일지 작성 ⑦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의 확인 ⑧현장 반입자재 검수 및 승인 ⑨중간검사	없음
4.준공	①준공확인서 제출 ②체크리스트 작성	건설산업 기본법

3.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단체 및 산업 현황

3.1.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 단체 현황

(1)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sup>12)</sup>

1979년 7월 28일에 39명의 창립동인으로 창립하여 1982년에 사단법인을 인가 받았다. 1989년에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II)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회장국으로도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수는 1,642명(2012년 4월 기준)이며, 설립취지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해양부 산하의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실내건축가의 자질향상과 친목도모 및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실내건축문화의 발전과 나아가 인간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자격 및 입회규정으로는 관련학과 대학을 졸업한 자 및 비관련학과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sup>13)</sup>

1992년 4월 24일에 설립하여 국내외 전공 관련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주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내디자인 관련 비영리단체이다. 회원수는 4,017명(2012년 3월 기준)이며, 설립취지는 공간문화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내디자인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실내디자인학의 창달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고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자격 및 입회규정으로는 관련학과 대학을 졸

12)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http://www.kosid.or.kr>

13)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http://www.kiid.or.kr>

업한 자 및 비관련학과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자로서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3) 실내건축공사협회(ICC)<sup>14)</sup>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문기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실내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모임으로서 1991년 8월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장공사협의회(ICC)로 발족한 등록 회원사단체이다. 초기에는 '목공사업'이 근간이 되었고 1990년 12월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한 '의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9년 8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회원 수는 등록 회원사 4,415(2012년 2월 기준)개사이며, 설립취지는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시책과 진흥방안을 연구·심의하여 건의하고, 실내건축공사업 고유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문기술 개발을 통한 자생력을 향상시켜 협회 및 전문공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자격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법인 또는 개인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관(제8조)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 신청서류와 입회비 등을 납부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이 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내건축공사협회 회원사가 된다.

상기 내용에 의거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 3단체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 3단체 비교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KOSID)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KIID)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회 (ICC)
설립	1979년 7월 28일 창립 1982년 사단법인 인가	1992년 4월 24일 설립	초기에는 '목공사업'이 근간이 되어 1990년 건설업법에 의한 '의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됨.
회원 수	1,642명 (2012년 4월 기준)	4,017명 (2012년 3월 기준)	등록 회원사 4,415개사 (2012년 2월 기준)
설립 취지	인간의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979년 창립한 국토해양부 산하의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실내건축가의 자질향상과 친목도모 및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실내건축문화의 발전과 나아가 인간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간문화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내디자인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실내디자인학의 발달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도모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설립됨.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시책과 진흥방안을 연구, 심의하여 건의하고, 실내건축공사업 고유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문기술 개발을 통한 자생력을 향상시켜 협회 및 전문공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회원 자격	관련학과 대학을 졸업한 자 및 비관련학과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관련학과 대학을 졸업한 자 및 비관련학과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자로서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법인 또는 개인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관(제8조)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 신청서류와 입회비 등을 납부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이 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내건축공사협회 회원사가 됨.

14)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회, <http://www.kicc.or.kr>

3.2.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산업 현황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불구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회 6개년도(2005년-2010년) 실내건축공사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의 기성실적은 2010년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를 보인 것 이외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실내건축공사업 실적 개관<sup>15)</sup>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전문건설업 기성액(23개업종)	64,225,290	64,491,199	71,363,539	74,103,230	80,489,896	58,600,086
실내건축공사업 기성액	6,662,208	7,049,889	7,990,072	8,182,591	7,947,328	6,986,607

이와 같이 기성액 증가에 따라 전체 전문건설업의 기성액에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성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는 12.63%, 2006년도에는 13.33%, 그리고 2007년도에는 14.0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에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13.27%로 감소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12.32%로 더욱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2010년도에는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와 공공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전문건설업 기성액 대비 -4%라는 기성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 공사업은 14.36%를 점유하면서 전년 대비 12%의 기성액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공사 부문에서 실내건축 공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어 진다.

4.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분류 및 관련법 현황

4.1.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현황

(1)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의 산업분류 구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통계목적에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6)</sup>

15)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회, <http://www.kicc.or.kr> 실내건축공사업 실적 재구성

16) 이연숙 외 5인, op. cit., p.48

<표 8>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의 산업분류<sup>17)</su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F. 건설업	42. 전문 직별 공사업	424. 실내건축 건축마무리 공사	4241.도장, 도배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11.도장공사업 42412.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4242.유리 및 창호공사업	42420.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491.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2.건물용금속공작물 설치공사업 42499.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721.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2921.측량업 72922.제도업 72923.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지도제작업			
			731.수의업	7310.수의업	73100.수의업		
			732.전문디자인업	7320.전문디자인업	73201.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제품 디자인업 73203.시각 디자인업 73209.기타 전문 디자인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3.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1.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73302.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사진 처리업			
			7390.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1.매니저업 73902.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사업 및 무형 재산권 증개업 73904.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41.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산업 단체 9412.전문가 단체	94110.산업단체 94120.전문가 단체		
			942.노동조합	9420.노동조합	94200.노동조합		
			94. 협회 및 단체	949.기타 협회 및 단체	9491.종교 단체	94911.불교 단체 94912.기독교 단체	94913.천주교 단체 94914.민족종교 단체 94919.기타 종교 단체
					9492.정치 단체	94920.정치 단체	
					9493.시민운동 단체	94931.환경운동 단체 94939.기타 시민운동 단체	
					9499.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11.산업 단체	94110.산업단체	
					9412.전문가 단체	94120.전문가 단체	
9420.노동조합	94200.노동조합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분류 F. 건설업의 중분류 42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소분류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

17)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자료 : 통계청)

사업은 세분류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실내디자인(실내건축)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건축의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세세분류인 인테리어 디자인업이고 시공하는 업체는 건설업의 소분류 건축마무리 공사업에 포함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를 분석한 결과 F. 건설업에서 분류되고 있는 소분류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공사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내디자인(실내건축) 시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건축마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실내건축 관련 분류는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소분류 732 전문디자이너업의 세분류 7320 전문디자인업의 세세분류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같은 분류 코드의 세세분류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의 예시에 포함되는 무대 디자인 산업활동도 실내디자인(실내건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대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의 중분류 94 협회 및 단체에서 소분류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중 세분류 9411 산업단체의 세세분류 94110. 산업단체의 예시에 실내건축공사업협회와 한국TV디자이너협회와 디스플레이협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같은 코드의 세분류 9412 전문가 단체의 세세분류 94120 전문가단체에는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와 (사)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포함되어 분류될 수가 있다.

(2)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의 직업분류 구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분류)한 것이다.<sup>18)</sup>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 2007-3호(2007.7.2)로 확정고시하고 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직업분류에 실내디자인(실내건축)관련 분류명칭 및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 28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 및 관련직 중분류의 직업은 소분류 285 디자이너의 세세분류에 2853 실내장식 디자이너, 28531 인테리어 디자이너<sup>19)</sup>, 28532 디스플레이어, 28533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로 명시되어 있다.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 중분류 23 공

18) 이연숙 외 5인, op. cit., p.50  
19)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분류 명기도 2000년의 개정 작업 시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에서 한국 디자인진흥원(KIDP)를 통해 '실내장식가'라는 명칭을 '실내디자이너'로 명칭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이루어진 사안이다.

학관련 전문가 및 기술직의 소분류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세분류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의 세세분류, 23111 건축가, 23112 건축감리 기술자, 23113 건축구조설계 기술자, 23114 건축시공 기술자, 23115 건축설비 기술자, 23116 건축안전환경 기술자, 23119 그 외 건축 관련 기술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 실내건축 직업분류를 살펴보면 실내디자인이나 실내건축이라는 명칭이 제도권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의 직업분류<sup>20)</su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공학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32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23111. 건축가	
				23112. 건축감리 기술자	
				23113. 건축구조설계 기술자	
				23114. 건축시공 기술자	
				23115. 건축설비 기술자	
				23116. 건축안전환경 기술자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	
				2312. 토목공학 기술자	23121. 토목구조설계 기술자
					23122. 토목시공 기술자
					23123. 토목안전환경 기술자
					23124. 토목감리 기술자
					23129. 그 외 토목관련 기술자
					23130. 조경 기술자
				1314.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	23141. 도시계획 및 설계가
					23142. 교통계획 및 설계가
23143. 교통안전 연구원					
23144. 교통영향 평가원					
2315.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23151. 측량 및 지리정보 기술자				
	23152. 사진측량 및 분석가				
	23153. 지도제작 기술자				
	23154.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2316. 건설자재 시험원	23160. 건설자재 시험원				
28.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5. 디자이너	2851. 제품디자이너	28511. 자동차 디자이너		
			28512. 가구 디자이너		
			28519. 그외 제품 디자이너		
			28531. 인테리어 디자이너		
			28532. 디스플레이어		
28533.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 4.2. 국내 건축 및 실내건축, 디자인 관련법 현황

### (1)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sup>21)</sup> 제3조(정의) 4항 ‘건축디자인’에 대한 정

20)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자료 : 통계청 )

21) 건축기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www.law.go.kr](http://www.law.go.kr)

의를 살펴보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공간환경의 범위와 실내디자인(실내건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복됨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공공공간’ ‘건축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자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상기 상위법에는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이란 용어가 없으며, 시공업무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전문건설업의 건설업종에만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건축법

건축법<sup>22)</sup>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항에서는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건축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으로는 소형 면적으로만 한정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13년 2월 23일부터는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는 법적인 설계권한이 없기에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법적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에 있는 건축사의 설계 업무인 <표 8>내용 중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업무(①인테리어 설계업무)에 유의하여 건축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건축사법

건축사법<sup>23)</sup> 중 건축사의 설계업무 범위에는 건축주의

22) 건축법[타]일부개정 2012.2.22 법률 제11365호 시행일 2013.2.23],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www.law.go.kr](http://www.law.go.kr)

23) 건축사법[일부개정 2011.05.30 법률 제10756호 시행일 2012.5.31.],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公作物)의 축조(축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

요청에 의한 업무내용 중 계약의 범위에 있어서 추가발주 업무에 속하는 '인테리어 설계업무'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수주하여 직접 해결할 수 있거나 발주자의 승인 하에 적합자격자에게 재발주할 수 있으며, 또는 건축주가 직접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적합자격자로서 실내디자인(실내건축)전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설계업무 인정이 법제화 될 필요가 있다.<표 10>24)

<표 10>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구 분	업무의 내용	계약의 범위	품질 (갑의확인)	비용의 산출	비고
기획업무	①규모검토	△	I, II, III		
	②현장조사	○, △	I, II, III		
	③설계지침서, 설계공정표, 그 밖의 조사비교	△	II, III		
설계도서 작성업무	①계획설계도서	○, △	기본, 중급, 상급		
	②중간설계도서 (인, 허가용도서)	○, △	기본, 중급, 상급	건축법시행규칙 6조1항	
	③실시설계도서	○, △	기본, 중급, 상급		
사후설계 관리업무	①시공과정에서의 설계의도 해석, 자문 등	△			설계도서작성 기준 2조7항
	②상세시공도서	△			
	③건축물의유지관리지침서	△			
	④건축물대장작성	△			
그 밖에 도서작성 업무(특수 분야 포함)	①조감도/투시도(내, 외)	△			
	②각종심의(건축, 경관, 문화재……)	△			
	③시방서(특기, 일반)	○, △			일반에 한함
	④계산서(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질, 지질……)	○, △			해당부분 및 분야에 한함
	⑤수량산출조서	△			
	⑥공사비에상내역서	△			
	⑦측량, 지질 조사……	△			
	⑧관청대행업무	△			
	⑨그 밖에 건축주의별도요구 등	△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업무	①인테리어 설계업무	△		
②음향, 차음, 방음, 방진설계업무		△			
③3D모델링업무		△			
④모형제작업무		△			
⑤VE설계에 따른 업무		△			
⑥Fast Track 설계방식업무		△			가치공학
⑦휴막이상세도 작성업무		△			굴토깊이 : 10M이상
⑧건축물의 분양 관련 지원업무		△			
⑨그 밖에 건축주의별도요구 등		△			

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www.law.go.kr

24) 2009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건축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를 <표 10>과 같이 개정·고시하였다.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 사업관리(CM)업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 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				
그 밖의 업무(건축주의 요청)	①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업무	△			
	②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업무	△			
	③건축물의 사용승인도서 작성업무	△			
	④종합계획도 작성업무	△			종합계획
	⑤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			
	⑥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업무	△			건물 전 생애주기 비용 분석
	⑦그 밖에 건축사가 참석하는 업무	△			

업무의 구분(기본:○, '갑'의 추가:△)

\*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업무 중 ①인테리어 설계업무에 유의해야 함.

####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sup>25)</sup>에 있어서 실내디자인(실내건축)영역은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 1999년4월 15일에 개정된 건설산업기술법의 제8조 건설업의 종류에서 실내디자인(실내건축)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 이 법령에는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분류에서도 독립적인 영역도 없이 424 소분류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정도인 낮은 분류로 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는 전문건설업이면서도 설계와 시공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복합적인 공정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시행해야 하는 전문성 및 특수성이 있는 업역 임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의 법적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181호],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www.law.go.kr



(5)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sup>26)</sup>에 있어서 제2조(정의)에서는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와 유사한 용어가 광의적인 ‘환경디자인분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업역에 대한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급속한 성장 및 발전을 이루고 있는 환경디자인분야의 교육계 및 산업계의 육성정책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디자인분야의 업역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sup>27)</sup>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각각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sup>28)</sup>에 있어서 엔지니어링기술 분야와의 업무 연관성(법 제2조, 영 제3조)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기술은 2011년 4월30일까지는 응용이학부문으로 디자인분야에서는 제품디자인분야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산업부문으로 포장·제품디자인분야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는 제2조(정의) ‘산업디자인’의 영역을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으로 규정한 것과는 매우 불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을 하는 시각디자인·환경디자인분야(실내디자인분야, 실내건축분야 포함)도 엔지니어링기술로 포함시

키고 디자인분야별 디자인기술자 인정제도 등의 보완·개정 등이 요구되어 진다.

4.3.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 분석의 종합

(1)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산업 및 직업분류 분석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분야의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조사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산업 및 직업분류 분석

분류	분석 내용	분석결과
산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분류 F. 건설업의 중분류 42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소분류 424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424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은 세분류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사무리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li> <li>○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건축의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세세분류인 인테리어 디자인업이고 시공하는 업체는 건설업의 소분류 건축사무리 공사업에 포함됨.</li> <li>○또 다른 실내건축 관련 분류는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소분류 732 전문 디자인업의 세분류 7320 전문디자인업의 세세분류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같은 분류 코드의 세세분류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의 예시에 포함되는 무대 디자인 산업활동도 실내건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li> </ul>	<p>현행 소분류 424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공사업으로 혼용되어 있는 것을 독립적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분리하여야 함.</p> <p>실내 디자인(실내건축)업역의 정의가 규정되어져야 함.</p>
직업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 2007-3호(2007.7.2)로 확정고시하고 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직업분류에 실내건축(인테리어디자인)관련 분류명칭 및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 28 문화예술스포츠전문가 및 관련직 중분류의 직업이 아니라, 28531 디자이너의 세세분류에 2853 실내장식 디자이너, 28531 인테리어 디자이너, 28532 디스플레이어, 28533 무대 및 세트디자이너로 명시되어 있음.</li> <li>○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 중분류 23 공학 관련 전문가 및 기술직의 소분류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세분류 2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의 세세분류, 23111 건축가, 23112 건축감리 기술자, 23113 건축구조설계 기술자, 23114 건축시공 기술자, 23115 건축설비 기술자, 23116 건축안전환경 기술자,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li> </ul>	<p>현행 세세분류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으로 분류된 업역을 소분류 또는 세분류에 독립적인 인테리어디자인업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p> <p>용어에 대한 조정 및 재정립이 요구되어짐.</p>

<표 11>에서 나타났듯이 실내디자인(실내건축)업역 미래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 등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제반 관련 제도의 개정을 위한 일관된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첫째, 산업분류측면에서는 실내디자인(실내건축)업이 소분류 424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을 건축사무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실내건축공사업 업역으로 분리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분류측면에서는 산업분류보다도 2단계 등급이 낮은 세세분류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속하여 있다. 따라서 현재의 등급을 소분류 또는 세분류로 상향시켜야 하며, 용어에 대한 조정 및 재정립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 산업디자인진흥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88],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www.law.go.kr

27) 국가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www.law.go.kr

2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일부개정 2012.1.26 법률 제1123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www.law.go.kr

(2)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 건축 및 디자인 관련법 분석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 관련 건축 및 디자인 관련법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 건축 및 디자인 관련법 분석

구분	관련법	분석 내용	분석결과
건축	건축 기본법	제3조(정의)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의미함.	실내 디자인(실내건축)분야에 대한 인정 관련 법제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	실내 디자인(실내건축)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설계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	'인테리어설계업무' 영역에 대한 실내디자인(실내건축)전공자의 적합자격자로 법제화하여야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실내 디자인(실내건축)분야가 시공영역으로만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함.	제2조(정의)에 '실내디자인'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국가계약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와 제4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물품 혹은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근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함.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중 '전문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분야에서 제품디자인분야는 제품디자인기술사로 인정받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5. 결론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경우 한

국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에 의한 분류기준에 있어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이 실내디자인(실내건축)과는 상이한 용어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실내디자인(실내건축)업 분야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화와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건축업과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건축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진다.

또한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는 불공정한 법제도 및 업계의 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업역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규정이 요구되는 등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을 조사·분석한 결과, 제도개선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가 건축과 상생할 수 있는 산업분류로 개정하여야 한다.
- (2)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가 건축과 상생할 수 있는 직업분류로 개정하여야 한다.
- (3) 건축사 설계업무 중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의 설계업무 업역에 대한 인정이 법제화 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건축사 설계 표준계약서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에 있어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업무 중 <표 13>의 ①인테리어설계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자격자로서 실내디자인(실내건축)전공자의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표 13> 실내디자인(실내건축)전공자의 설계업무 인정 관련 법제화 추진 부문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업무	①인테리어설계업무
	②음향, 차음, 방음, 방진설계업무
	③3D모델링업무
	④모형제작업무
	⑤VE설계에 따른 업무
	⑥Fast Track 설계방식업무
	⑦휩막이상세도 작성업무
	⑧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⑨그 밖에 건축주의별도요구 등

(4) 디자인과 상생하는 실내디자인분야의 업무 업역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에 '실내디자인(실내건축)'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5) 국가계약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중 '전문성'항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에 대한 관련법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

서는 국내외의 법제적 조사·분석을 통하여 건축분야와 상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오인욱, 실내계획론, 기문당, 서울, 1992
2. 박찬일, 국내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2012
3. 서수경, 한국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83호, 2010
4. 장행수, 디자인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5. 이연숙 외 5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업의 분류기준 개정작업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
6. 한국표준산업분류(자료 : 통계청 )  
(KSIC: Korean Sr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7. 한국표준직업분류(자료 : 통계청 )  
(KSCO : Korean Sr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8. 건축기본법, [www.law.go.kr](http://www.law.go.kr)
9. 건축법, [www.law.go.kr](http://www.law.go.kr)
10. 건축사법, [www.law.go.kr](http://www.law.go.kr)
11. 건설산업기본법, [www.law.go.kr](http://www.law.go.kr)
12. 산업디자인진흥법, [www.law.go.kr](http://www.law.go.kr)
13. 국가계약법, [www.law.go.kr](http://www.law.go.kr)
1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www.law.go.kr](http://www.law.go.kr)
15. 한국실내건축가협회, <http://www.kosid.or.kr>
16. 한국실내디자인학회, <http://www.kiid.or.kr>
17.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http://www.kicc.or.kr>

[논문접수 : 2012. 12. 28]

[1차 심사 : 2013. 01. 22]

[게재확정 : 2013. 02. 08]